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을 생각하다

코로나19로 택배 주문 건수가 늘어났다. 집 밖에 나가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어지간한 물건이나 음식 등은 전부 배달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달이 늘어난 만큼 배달종사자는 급증한 배달 건수를 소화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고양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지원에 나섰다.

글. 이경현(고양소식 편집위원)

배달물량 늘어난 만큼 위험도 늘어

비대면으로 인해 배달이 늘어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늘고 있지만, 배달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주문물량이 늘어난 만큼 배달종사자의 수가 같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일 뉴스에선 배달종사자들의 과로사 등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늘어난 양을 오늘 하루에 다 처리하기 위해 배달종사자들은 더 빨리 다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앱을 이용한 주문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1건이라도 더 많이 배달할수록 자신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알면서도 위험한 질주를 한다.
실제 오토바이 사고의 30%가 배달종사자일 정도로 배달종사자의 안전 문제는 매우 취약하다. 지난 3년 동안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세상을 떠난 18~24세의 노동자는 32명에 이른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됐지만, 여전히 미흡

그런 까닭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헬멧 등 안전장비는 개인이 마련해야 하고, '요기요' 등 플랫폼업체는 면허증과 헬멧 등을 확인하는 정도가 전부다. 여전히 배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올해 1월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제9조(지원) 1항**
>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이를 통해 관내 약 2,400명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배달종사자(음식 배달 1,488명 및 퀵서비스 926명)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누구에게 지원하나?

우선 지원 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오토바이 배달종사자와 직접 배달을 하는 사업자다.
안전장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고양시 일자리정책과로 영수증을 접수하면 10만 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구입 영수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및 배달종사자 확인 서류(플랫폼 등록 출력물, 배달 관련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 확인서 등) 혹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행 시기는 7월 예정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후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기간 2021년 12월 20일까지(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지급은 매월 1일과 15일에 할 예정이다.

※ '배달종사자'보다 '배달노동자'가 더 적합한 표현이지만, 본 고에서는 고양시 관련 조례를 준용해 '배달종사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양시노동권익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9, 6층) 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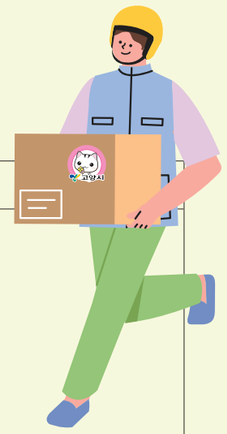

>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
> **시행시기** 7월 예정 ※ 보건복지부 협의 후
> **안전 장비** 야광조끼, 헬멧, 보호대 등
> **지원금액** 안전장비 구입 후 3개월 이내 영수증 제시하면 10만 원 이내 현금 지급
> **신청방법** 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영수증,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배달종사자인지 확인 가능한 서류(택 1)
> · 종사자: 플랫폼 등록 출력물, 배달 관련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확인서
>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오토바이 등록증 등
> · 기타 배달 종사자(사업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031-8075-3562)